

#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5. 2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의 학업이수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학점단위등록)** ① 졸업이수학기를 수학과거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요하고 미달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달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2017.5.23.>

② 등록할 학기에 교과목 개설관계로 학점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학기는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삭제 <2017.5.23.>

④ 학점단위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은 전공, 교양, 교직으로 구분하며 매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2. 수강신청자는 소정기일 내에 확정된 수강신청 내역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강제한)**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서 2학점을 제한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상담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자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제한을 면제한다.

다. <신설 2015.8.31.>

**제4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4조의2(수강승인 불허)** ①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폐강된 교과목
2. 본 규정 제4조에 의한 수강시간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강시간을 변경하여 신청한 교과목
3.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제4조의3(전 과목이수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아니하거나 수강신청 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4.3.1.>

**제5조(폐강)** ① 수강신청자가 기준인원의 10명 미만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② 폐강된 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폐강된 과목의 수강신청자는 그 과목에 따른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5조의2(과목분반)**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은 강의실을 변경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

### 제 3 장 학업성적 처리

**제6조(성적평균)** ① 매학기 성적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으로 나눈 값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다음 공식과 같이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점수(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 평균으로 한다.

$$\text{졸업종합점수(평점)평균} = \frac{\{\text{취득과목별 점수(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 \text{의 합계}}{\text{총 이수학점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수평균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평점평균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사사오입하지 않는다.

④ 성적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계
2. 총점평균
3. 총점계

#### 4. 백분율

#### 5. 취득학점

⑤ 모든 성적이 동일할 경우 같은 성적순위로 처리한다.

⑥ 자율선택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경우 해당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나, 해당학기 평점평균 및 총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시험 및 평가)**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는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교과목으로 담당교수가 다른 경우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한 후 관련서류를 3년까지 보관하며, 외래강사는 성적 관련 서류를 학기 종료 후 학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2016.11.9.>

**제7조의2(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 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관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 학부(학과)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출석성적)** ①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② 전국체전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교육실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정병검사 등)로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학처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③ 학생이 상을 당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부모상은 7일, 조부모상은 5일, 그 외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기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성적 공시 및 이의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지정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을 한 후 출력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제6조 제1항에 의한다.

**제10조(학기도중 휴학자의 성적)**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 전에 입영 휴학자는 휴학원에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의 희망에 따

라 표시하게 하여 처리한다.

## 제 4 장 휴학·복학·재입학·자퇴·제적

**제11조(휴학기간)** ① 입영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재학 중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타 타당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15., 2014.3.1.>

**제12조(일반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13조(입영휴학)** ① 입영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일 14일전부터 입영통지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입영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2014.3.1.>

②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③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휴학한 경우 복학학기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영 휴학자 중 당해학기 성적을 포기한 경우 복학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창업휴학)** ① 창업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휴학에서 허용된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휴학과 연계 또는 별도 신청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4.3.1.]

**제13조의3(육아휴학)** ① 육아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휴학에서 허용된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 휴학과 연계 또는 별도 신청 가능하다.

② 육아휴학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② 학칙 제30조(휴학) 제3항 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동시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관련 교과 6학점 이상 수강한 자로 한다. <신설 2014.3.1.>

**제14조(휴학취소)** ①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을 신청 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 제출 2주 이내에 휴학취소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입영휴학을 신청한 자가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되었을 때는 휴학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16조(입영휴학자의복학)** ① 입영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증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영휴학한 자는 전역 후 수업일수 4분의 1일 이전에 복학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칙 제2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7.1., 2014.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학부(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며 해당 학부(학과)의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 신청시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3.1.>
2. 무계출 결석이 출석일 수 1/4 이상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률이 현저히 저조한 자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8.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

## 제 5 장 교내전과

**제20조(자격)** 교내 전과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제1학기 중 지정 공고된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전입학과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4.3.1.>

**제21조(허용범위)** ①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에 상관없이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단,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부(학과)의 전공과목 2년제(56학점), 3년제(8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29조 3항에 따라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언어재활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전과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4.3.1.>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